「에너지정책기본법」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평성14<2002>년 법률 제71호
- **공 포 일**: 2002년 6월 14일

원문	번역문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エネルギーが国民生活の安定向上並びに国民経済の維持及び発展に欠くことのできないものであるとともに、その利用が地域及び地球の環境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にかんがみ、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に関し、基本方針を定め、並びに国及び地方公共団体の責務等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の基本となる事項を定めることにより、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を長期的、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し、もって地域及び地球の環境の保全に寄与するとともに我が国及び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가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 국민경제의 유지 및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동시에 그 이용이 지역 및 지구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지역 및 지구 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일본 및 세계의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

世界の経済社会の持続的な発展に貢献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로 한다.
第二条（安定供給の確保） エネルギーの安定的な供給については、世界のエネルギーに関する国際情勢が不安定な要素を有していること等にかんがみ、石油等の一次エネルギーの輸入における特定の地域への過度な依存を低減するとともに、我が国にとって重要なエネルギー資源の開発、エネルギー輸送体制の整備、エネルギーの備蓄及びエネルギーの利用の効率化を推進すること並びにエネルギーに関し適切な危機管理を行うこと等により、エネルギーの供給源の多様化、エネルギー自給率の向上及びエネルギーの分野における安全保障を図ることを基本として施策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2조**（안정공급의 확보） 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에 대하여는 세계의 에너지에 관한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요소를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입 시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저감하는 동시에 일본에 중요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 에너지 수송 체제의 정비, 에너지 비축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추진 및 에너지에 관하여 적절한 위기 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에너지 자급률의 향상 및 에너지 분야의 안정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他のエネルギーによる代替又は貯蔵が著しく困難であるエネルギーの供給については、特にその信頼性及び安定性が確保されるよう施策が講じ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다른 에너지에 의한 대체 또는 저장이 매우 어려운 에너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특히 그 신뢰성 및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三条（環境への適合） エネルギーの需給については、エネルギーの消費の効率化を図ること、太陽光、風力等の化石燃料以外のエネルギーの利用への転換及び化石燃料の効率的な利用を推進すること等により、地球温暖化の防止及び地域環境の保全が図られたエネルギーの需給を実現し、併せて循環型社会の形成に資するための施策が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3조**（환경적합성） 에너지 수급에 대하여는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도모하고, 태양광, 풍력 등 화석 연료 외의 에너지 이용으로의 전환 및 화석 연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지역 환경의 보전을 도모한 에너지 수급을 실현하는 동시에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四条（市場原理の活用） エネルギー市場の自由化等の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経済構造改革については、前二条の政策目的を十分考慮しつつ、事業者の自主性及び創造性が十分に発揮され、エネルギー需要者の利益が十分に確保されることを旨として、規制緩和等の施策が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제4조**（시장원리의 활용） 에너지 시장의 자유화 등 에너지 수급에 관한 경제구조개혁에 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정책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자가 자주성 및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에너지 수급자의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취지로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第五条（国の責務） 国は、第二条から前条までに定める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の基本方針	**제5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정하는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방

（以下「基本方針」という。）にのっとり、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２　国は、エネルギーの使用に当たっては、エネルギーの使用による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資する物品を使用すること等により、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② 국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 부하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第六条（地方公共団体の責務） 地方公共団体は、基本方針にのっとり、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し、国の施策に準じて施策を講ずるとともに、その区域の実情に応じた施策を策定し、及び実施する責務を有する。 ２　地方公共団体は、エネルギーの使用に当たっては、エネルギーの使用による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資する物品を使用すること等により、環境への負荷の低減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제6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① 지방공공단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하여 국가의 시책에 준하여 시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그 구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등 환경 부하의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第七条（事業者の責務） 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に際しては、自主性及び創造性を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에는 자주성 및 창조성을 발휘

発揮し、エネルギーの効率的な利用、エネルギーの安定的な供給並びに地域及び地球の環境の保全に配慮したエネルギーの利用に努めるとともに、国又は地方公共団体が実施する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に協力する責務を有する。	하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지역 및 지구 환경의 보전을 배려한 에너지 이용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진다.
第八条（国民の努力） 国民は、エネルギーの使用に当たっては、その使用の合理化に努めるとともに新エネルギーの活用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8조**（국민의 노력） 국민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신에너지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第九条（相互協力） 国及び地方公共団体並びに事業者、国民及びこれらの者の組織する民間の団体は、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し、相互に、その果たす役割を理解し、協力するものとする。	**제9조**（상호협력）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및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 단체는 에너지 수급에 관하여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한다.
第十条（法制上の措置等） 政府は、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を実施するため必要な法制上、財政上又は金融上の措置その他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 또는 금융상의 조치,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第十一条（国会に対する報告） 政府は、毎年、国会に、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して講じた施策の概況に関する報告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하여 그 개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第十二条（エネルギー基本計画） 政府は、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の長期的、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を図るため、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基本的な計画（以下「エネルギー基本計画」という。）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２　エネルギー基本計画は、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定めるものとする。 一　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についての基本的な方針 二　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し、長期的、総合的かつ計画的に講ずべき施策 三　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を長期的、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ために重点的に研究開発のための施策を講ずべきエネルギーに関する技術及びその施策	**제12조**（에너지 기본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수급에 관한 기본적 계획(이하 “에너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1.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2. 에너지 수급에 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3.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에너지에 관한 기술 및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エネルギーの需給に関する施策を長期的、総合的かつ計画的に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	그 시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에너지 수급에 관한 시책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経済産業大臣は、関係行政機関の長の意見を聴くとともに、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の意見を聴いて、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案を作成し、閣議の決定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③ 경제산업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과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의견을 듣고 에너지 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여 각의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経済産業大臣は、前項の規定による閣議の決定があったときは、エネルギー基本計画を、速やかに、国会に報告するとともに、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④ 경제산업대신은 제3항에 따른 각의결정이 있은 때에는 에너지 기본계획을 신속히 국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공표하여야 한다.
5 政府は、エネルギーをめぐる情勢の変化を勘案し、及びエネルギーに関する施策の効果に関する評価を踏まえ、少なくとも三年ごとに、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検討を加え、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には、これを変更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⑤ 정부는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고, 에너지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에 입각해 최소 3년마다 에너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6 第三項及び第四項の規定は、エネルギー基本計画の変更について準用する。	⑥ 제3항 및 제4항은 에너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7　政府は、エネルギー基本計画について、その実施に要する経費に関し必要な資金の確保を図るため、毎年度、国の財政の許す範囲内で、これを予算に計上する等その円滑な実施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⑦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원활한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十三条（国際協力の推進） 国は、世界のエネルギーの需給の安定及びエネルギーの利用に伴う地球温暖化の防止等の地球環境の保全に資するため、国際的なエネルギー機関及び環境保全機関への協力、研究者等の国際的交流、国際的な研究開発活動への参加、国際的共同行動の提案、二国間及び多国間におけるエネルギー開発協力その他の国際協力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제13조**（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는 세계의 에너지 수급의 안정 및 에너지 이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방지 등 지구환경의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에너지 기관 및 환경보전기관에 대한 협력, 연구자 등의 국제적 교류, 국제적인 연구개발활동 참가, 국제적 공동행동의 제안, 양국간 및 다국간의 에너지 개발협력, 그 밖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第十四条（エネルギーに関する知識の普及等） 国は、広く国民が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エネルギーに対する理解と関心を深めることができるよう、エネルギーに関	**제14조**（에너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 국가는 국민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する情報の積極的な公開に努めるとともに、営利を目的としない団体の活用に配慮しつつ、エネルギーの適切な利用に関する啓発及びエネルギーに関する知識の普及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努めるものとする。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활용을 고려하면서 에너지의 적절한 이용에 관한 계발 및 에너지에 관한 지식의 보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附 則 抄	부칙